

2024년도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4. 11. 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심동섭, 최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4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04건(안건번호 제2024-34398호~3620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34398호~34399호(순번 1번~2번)는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34400호(순번 3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34401호~34415호(순번 4번~18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34416호~36201호(순번 19번~1804번)는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4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2.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동일.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10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OOO 카페에 게시된 영상 불법 복제물로 총 6건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번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순번 1번~2번의 사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

- 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웹소설 'OOOOO OO O'을 게시한 사안으로 총 1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3번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순번 3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1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OOOO'와 OOO 카페 'OOOO'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22건이며, 위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4번~18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4번~1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18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9번~180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게시물 수는 3,072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비키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73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비키퍼'의 전체 분량을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4. 3. 개봉하여 현재까지 상영 중인 영화임.
(드라마 '여보행'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056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여보행' 한편을 11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으로, 총 39부 중 1편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4. 3. 22.부터 WeTV 등에서 제공되는 중국 드라마임.
(SW 'Adobe Photoshop 202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85번은 웹하드에서 SW 'Adobe Photoshop 2024'를 47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어도비 코리아' 사이트에서 구독 형태로 월 30,800원에 판매 중인 SW임. 조사 자료를 보면 암호화된 파일이 업로드되어, 사용자 쪽에서 다운로드 후 복호화를 해야하지만, 복호화

프로그램은 시중에서 아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0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최진원 위원: 판매되는 소프트웨어가 구독형일 경우 매달 인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웹하드에 업로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냥 설치가 되는 것인가.
- 박현주 전문위원: 웹하드에 게시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인증하기 전의 파일이 아닌 크랙 버전을 게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9번 이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9번~180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34398호~34399호(순번 1번~2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34400호(순번 3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34401호~34415호(순번 4번~18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34416호~36201호(순번 19번~1804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538호~2673호(순번 1번~136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18.

분과위원장 김원

위원 심동섭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